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3일,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양수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임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이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 행위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않으나,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규정하여 선거일 전 일정 기간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에 우선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화환·화분 제공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법률 제20179호, ‘24. 1. 30. 시행)되었고, 농업협동조합법도 임원 선거시 화환·화분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도 이를 반영하여 임원 선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5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1. 수협 임원 선거 시 화환·화분 제공 허용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수협의 조합장·중앙회장 등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유형에서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儀禮的)인 금전·물품 제공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현행과 같음) ② ----------. 1. ---------- 가. ----------(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포상 및 화환·화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2. 의례적 행위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은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나. ----------(화환·화분을 포함한다)----------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를 함에 있어 임원 임기 만료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등이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1)]

- 현행법 제53조의2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선거인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직무상 행위 또는 의례적 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금전·물품의 제공행위는 허용하고 있으나, 화환·화분의 제공은 허용되는 기부

1) 제17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3조의2를 위반한 자

행위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음.

□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에 임원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중앙회의 경우 임원으로 회장 1명,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을 포함해 22명의 이사와 3명의 감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이 중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는 그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2]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탁선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3]이 종래 화환·화분 제공을 금지하던 것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2024.1.30. 시행)된바 있음.

- 그 밖에 「농업협동조합법」[4]과 「산림조합법」[5]의 경우 화훼산업의 위축 방지 및 화훼 인식 개선을 위해 임원 선거 시 화환·화분

---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② 지구별수협은 제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⑦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3)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에서 행하는 위탁선거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선거는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4)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2. 의례적 행위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5)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2항제1호 가목·나목, 제2호 나목

제공행위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있음(농협법 2017.1월 시행, 산림조합법 2018.12월 시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2024.1.30.시행)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위탁단체를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2. 의례적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 (현행과 같음)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위탁단체를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2. 의례적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 개정안은 이처럼 직무상 또는 의례적 행위의 범위에서 화환·화분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수협의 임원 선거의 경우 화환·화분의 제공을 허용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 현재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화환·화분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선거에 대해서는 이미 화환·화분의 제공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6].

다만, 수협법에는 아직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경우에도 화환·화분 제공이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현행법의 내용을 일치시켜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법체계적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 밖의 임원 선거의 경우 현재 위탁선거보다 공적 성격이 강한 「공직선거법」[7]의 경우에도 의례적 범위에서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농협이나 산림조합 등 다른 조합에서도 임원 선거 시 화환·화분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관 간 형평성 제고 및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선거 시 화환·화분의 제공이 허용되는 임원은 중앙회 임원 25명(회장, 이사 21명, 감사위원 3명)

---

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7)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나.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 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및 조합 임원 972명('24년 11월 기준) 등 총 997명임.

□ 관계 부처 등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유사 입법례 및 농협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